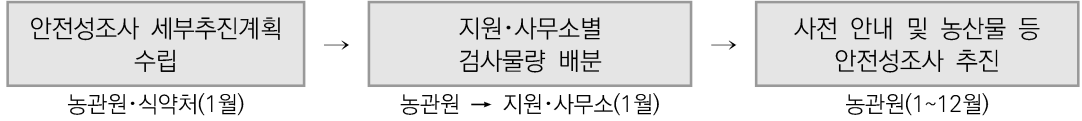


3 기관별 세부 추진사항

가.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교육



나. 공익직불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원	지원	사무소
1월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광역시도) 광역시도에 계획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기초시군) 기초시군에 계획 통보
1~12월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지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해영농실용교육 참석 등 생산농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해영농실용교육 참석 등 생산농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교육·홍보
	사전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안내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안내문 발송 시료수거 입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안내문 발송 시료수거 입회 요구
	시료수거 (연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지역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지역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 의뢰
	유해물질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위탁기관 선정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민간위탁기관 점검 정기 및 수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민간위탁기관 점검 정기 및 수시 점검 	-
	조사결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결과 부적합조치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결과 부적합품 조치 (생산단계)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 고지 고지결과 이행여부 확인 확인결과에 따라 미이행자 고발 등 조치 (유통단계) 생산자 추적조사 부적합 농업인 현장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결과 부적합품 조치 (생산단계)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 고지 고지결과 이행여부 확인 확인결과에 따라 미이행자 고발 등 조치 (유통단계) 생산자 추적조사 부적합 농업인 현장지도
24.10월 ~25.10월	공익직불 준수 의무 이행 점검 및 결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직불 준수 의무 미이행자 처리 지도 및 결과 관리 도매시장 등 유통·판매단계 안전성조사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 공익직불 준수 의무 미이행자 처리 허용기준 초과 농업인 고지사항 미이행자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자 시료수거 거부·기피자 의견 청취 및 최종 결과 SafeQ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 공익직불 준수 의무 미이행자 처리 허용기준 초과 농업인 고지사항 미이행자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자 시료수거 거부·기피자 의견 청취 및 최종 결과 SafeQ입력
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평가 '26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전국) 	-	-

4 식약처 및 지자체 추진사항

가.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기준 준수와 관련 되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나.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제15조(별표3)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 제12조, 제18조 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7조,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관리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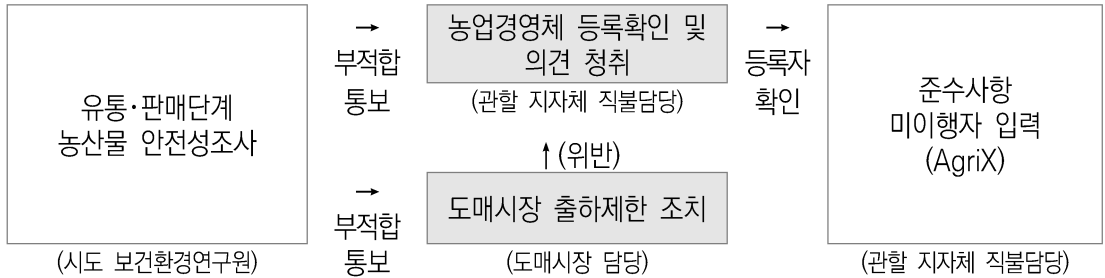
다. 적용시점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등록신청연도 전년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 안전성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라. 관리체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유해 물질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이 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기하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8조의2제2항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후 전국 도매시장에 통보하며 생산 농업인의 소재지에 속한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출하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이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농안법」 제9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마. 준수사항 이행점검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① (농업경영정보 확인)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기본직불금 신청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한다.
- ② (미이행자 제외대상) 검출된 농약성분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한다.
 - 검출된 농약성분이 DDT, 엔도설판(Endosulfan), 퀸토젠(Quintogene), BHC인 경우(* 농약 PLS 시행 대비 환경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구분)

- ③ (의견청취 등)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부적합 판정 결과 및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농업인의 농약 구매이력(농약판매상 확인), 영농일지에 사용 기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참고할 수 있다.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농약 안전사용교육 등) 시군구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부터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잔류허용기준을 미준수한 농업인 대상
-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하여야 한다.
 - * (1)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2) 정해진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3)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 (별지1)이 검출된 경우 농촌진흥청 또는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와 함께 구매처 (경로), 농가가 보유한 농약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지자체 담당자는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이 포함된 농약제품을 농약판매상에서 진열·판매·보관 등이 확인된 경우 「농약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고발등의 조치를 하고 사용한 농업인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기타 유해물질(이산화황) 잔류기준 준수

- ① (농업경영정보 확인)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기타 유해물질(이산화황)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 되어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기본직불금 신청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한다.

② (미이행자 제외대상) 유해물질이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한다.

- 중금속(카드뮴, 납, 비소(쌀)), 방사능, 독소류(아플라톡신 계열)인 경우

③ (의견청취 등)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①-③의 내용으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출하제한 명령준수

① (농업경영정보 확인) 시군구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로부터 「농안법」 제9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한다.

바. 이행점검결과 처리

○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②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③ 출하제한 명령준수를 위반한 기본직불금 등록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매년 10.1일까지 AgriX에 등록 완료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폐기) 농약성분 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

□ 등록 취소(폐기)농약성분(폐기연도)

* 토양 장기잔류로 디디티, 비에치시, 퀴토젠, 엔도설판은 환경유래 잔류허용기준 설정

파라티온메틸(1969년), 디엘드린(1970년), 디디티(1971년), 비에치시(1979년),
헵타클로르(1979년), 퀴토젠(1987년), 디설포톤(1989년), 클로로벤질레이트(1990년),
프로폭서(1990년), 클로르펜빈포스(1991년), 에트림포스(1996년), 터부트린(1998년),
벤족시메이트(2001년), 키노메티오네이트(2001년), 메카밤(2001년),
피리미포스메틸(2001년), 펜코나졸(2006년), 퓨라티오카브(2007년),
터부틸라진(2007년), 디코폴(2010년), 헥사플루무론(2010년), 아이소펜포스(2010년),
포사론(2010년), 피리미디펜(2010년), 트리아조포스(2010년), 엔도설판(2011년),
아닐로포스(2011년), 이피엔(2011년), 메토밀(2011년), 모노크로토포스(2011년),
오메토에이트(2011년), 파라티온(2011년), 피리미카브(2011년),
디클로플루아니드(2012년), 톨리플루아니드(2012년), 페노티오카브(2013년),
뉴아리몰(2013년), 프로피소클로르(2013년), 피라클로포스(2013년),
트랄로메트린(2013년), 빈클로졸린(2013년), 아진포스메틸(2014년),
플루아크리피림(2015년), 클로펜테진(2016년), 플루시트리네이트(2016년),
헥사지논(2016년), 말라티온(2016년), 몰리네이트(2016년), 포스파미돈(2016년),
피리미포스메틸(2016년), 피리다펜티온(2016년), 트리아디메놀(2016년),
에디펜포스(2017년), 실라플루오펜(2017년), 플루페나셋(2018년),
클로르피리포스(메틸포함, 2021년)

□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 농관원 안전성조사 결과 검출된 적은 있으나 국내 등록된 적이 없는 농약성분

디우론, 디클로포프메틸, 메톡시클로르, 에티오펜카브, 에티온, 옥사밀, 유니코나졸,
이마잘릴, 퍼메트린, 페나미포스, 페노트린,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등

Ⅲ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농촌진흥청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과 장 계 장 담당자	063-238-1495 063-238-1501 063-238-1502

* 협조 : 국립농업과학원,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지역농협 등

1 개요 및 일반사항

가.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관련,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나.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 5조 〉

- (법률)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 (시행규칙)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 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 제12조, 제18조제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다. 이행점검 적용기간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소유 농경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간 및 적용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기간 : 연중
 - * '25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전에 '24년도 신청자로 활용 사전 검정 가능하며, '25년 이행점검이 지역별 주요작기(제주도 동계 작기 시작 8월 등)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 '26년 상반기(3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 단, 예산의 집행은 '25.12월까지 완료
 - 이행점검 결과 적용 : '24.9.1.~'25.8.31.
 - * '25.8.31일 시료수거일 기준 조사결과,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까지 기본직불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확정 / '25.8.31일 이후 시료 수거를 통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6년도 감액반영
 - ** 감액대상은 기본직불 등록대상자(신청인 기준)만 해당

라. 이행점검 대상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대상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대상자에 한한다.
 - 농업인이 지자체에 희망조사 요청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본 사업과는 별도로 처리한다.
 - 다만, 지자체에서 희망조사를 통한 토양검정 결과는 ‘흙토람’에 등록하고,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처방에 맞게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대상 필지)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라 토양검정 대상 농경지는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농경지를 대상 필지로 관리한다. 아울러, 적합한 필지에 대하여 중복조사는 피한다.
 - 토양을 활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농경지, 육묘장 등은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상 작목)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을 한 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작물 목록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비료사용기준이 없는 조경수 및 소규모 작목은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 * ('21) 151작물 → ('22) 227작물 → ('23) 230작물 → ('24) 235작물 → ('25) 246작물

마. 검사항목 및 적용기준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대상 항목과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점검항목 :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교환성칼륨함량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

지목	① pH(1:5)		② 유기물(g kg ⁻¹)		③ 유효인산 (mg kg ⁻¹)	④ 교환성칼륨 (cmol _c kg ⁻¹)
	내륙	제주 울릉*	내륙	제주 울릉*		
논	5.5~6.5 (간척지 5.0~7.5)	5.0~7.5	13~30	13이상	120이하	0.30이하
밭	5.5~7.5		13~45			
과수원			13~53		825이하	1.20이하
시설재배지		17~53	17이상			

- * 토양특성이 특이한 ① 제주·울릉 지역(화산회 포함 토양)은 “pH와 유기물 기준” 별도 설정,
- ② 간척지 토양 중 “논”에 대해서는 pH 기준 별도 설정

▶ 간척지의 적용 : 토양의 특성을 나타내는 토양통에 따라 적용함

간척지 토양통(토양부호): 만경(Ma, Mg), 전북(Jb), 부용(Bg, Bp), 포승(Pe, PE, PL), 광활(Gw), 춘포(Cn), 김제(Gi, Gj), 북천(BH), 포리(Pr), 광포(Kw), 금진(Ki, KI) 가포(Kp), 태안(Td, TD), 등구(De, Du), 봉남(Bn, Bt), 염포(Yp), 문포(Mp), 김해(Gh), 공덕(Gg, Go), 다평(DD, Dt), 포두(Pp), 사두(Sd), 해척(Hc), 구포(Ku), 달동(Dd), 덕하(Dh), 백수(Bv), 울포(YH), 학성(Ho), 평해(PH), 봉림(Bm), 옹호(Yf, Ym), 여수(YF), 향호(Hq), 동호(DH), 서탄(ST), 승주(SW), 학포(HP)가 있고, 흙토람에서 검색이 가능함

※ 동일 필지 내에 간척지 토양통과 다른 토양통이 혼재할 경우에 간척지 토양 기준으로 적용함

* 토양검정 토양화학성분 분석 결과값의 반올림

- ① pH, 교환성칼륨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예시) pH 5.07 → pH 5.1
- ② 유기물, 유효인산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예시) 유기물 13.55 → 14

* 현장 확인 결과 경영체 등록정보상의 지목·품목과 상이할 경우 현장에서 확인한 지목·품목으로 적용하되, 농관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조치하도록 통보

* 작물특성이 특이한 5종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작물명	토양화학성 기준	비고
유채	유기물(13~60)	pH,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토란	유기물(13~50)	
차나무	pH(5.0~6.5), 유기물(13~50)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인삼 (예정지)	pH(5.0~6.5), 유기물(10~30)	
블루베리	pH(4.5~5.5) 유기물 기준적용 제외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 적합여부 판단기준

- * 1차 토양검정 적합여부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을 3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으로 한다.
 - 1차 토양검정 적합 필지는 적합 통보하고, 부적합 필지는 2차 토양검정에 반드시 포함
- * 2차 토양검정 적합여부(작물재배 후)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을 3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으로 한다. 2차 토양검정 적합 필지는 적합 통보하고,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3차 적합여부 추가 적용하여 최종 판정한다.
- * 3차 적합여부 : 2차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하여 아래 표 “3차 적합여부 판정기준” 분석항목 중 3개 이상이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으로 최종 판정한다.

〈3차 적합여부 판정 기준〉

항 목	구 분		판 정
pH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의 적정기준 범위 내		적 합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의 적정기준 범위 외		부적합
유기물	기준 초과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기준 미달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유효인산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치환성칼륨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바. 토양검정 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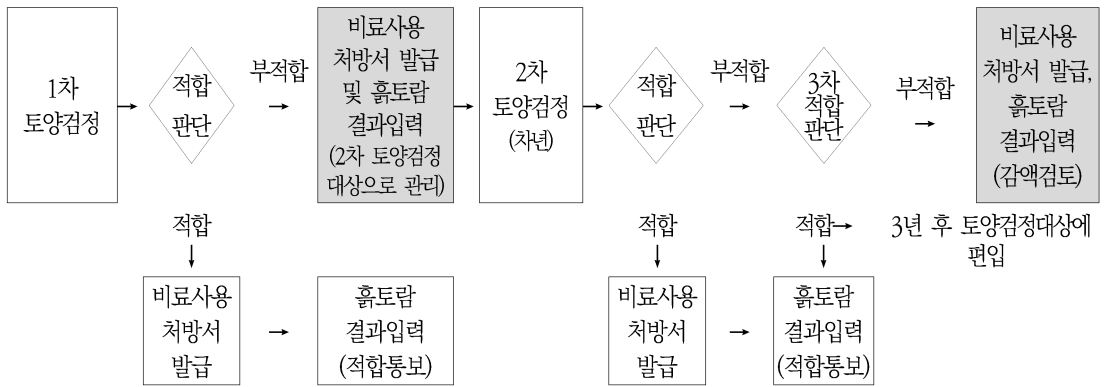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은 토양검정 대상자의 지역별 비율, 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송부하고 농식품부는 Agrix의 농업경영정보* 및 기본형 직불정보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토양검정 대상자를 선정 및 제공한다.

* 논·밭·과수원·시설재배지의 면적, 주요 재배작물 등

-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농가는 2차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 이행점검 대상 우선순위(안) : (1순위) 전년도 부적합 필지, (2순위) 당해연도 신규 신청 필지, (3순위) 3년 연속 미점검 필지, (4순위) 토양오염 우려 필지 등
 - * '25년 이행점검 1차 부적합 필지는 '26년 2차 대상필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료 수거 7일전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입회요청서 (양식별도)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한다.
 - 다만, 정해진 일자에 조사대상자 미입회 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할 수 있다.
 - 입회요청서는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필지에 대해 실시하는 2차 토양검정 필지부터 적용할 수 있다.

사. 이행점검 체계



- (1차 토양검정) 작물의 수확 직전~직후 또는 재배 직전(작물 재배전 이행점검 가능)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경지에 대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 3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으로 한다.
 - 토양검정 결과 농경지 내 화학비료 함량을 고려하여 재배작물에 적합한 비료 사용처방서를 발급하고 비료사용처방서를 근거로 비료를 구매하도록 지도한다.
 - 1차 토양검정 실시 결과 부적합 필지 발생 시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른 구매·살포 확인 등 특별관리하고 작물 수확 직후 2차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차 토양검정 결과 적합은 2차 토양검정 제외).
- (2차 토양검정) 1차 토양검정 이후 차년도 재배한 작물의 재배직전 또는 수확 직전~직후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 3개 이상 만족하면 적합 조치한다
 -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3차 적합여부를 추가 적용하여 최종 판정한다.

- (3차 적합여부) 2차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하여 “3차 적합여부 판정기준” 분석 항목 중 3개 이상이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으로 최종 판정한다.
 - 3차 적합판정필지는, 3년 이내(2차 토양검정 연도 + 3년)에 다시 1차 토양검정 대상에 포함하고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교육 등 집중 관리한다.

적용례

- (1차 발토양) pH 8.0, 유기물 11, 유효인산 900, 치환성칼륨 1.1 → 3항목 이상 부적합 ⇒ 부적합
- (2차 발토양) pH 7.0, 유기물 12, 유효인산 826, 교환성칼륨 1.3 → 1항목 적합 ⇒ 부적합
- (3차 발토양) 1차와 2차 토양검정 결과를 상호 비교하면 → pH가 적정범위 이내(적합), 유기물 개선 (11→12), 유효인산이 개선(827→826) 되었음(적합) ⇒ 3개항목 이상이 적합

- 시료채취
 - (1년생 작물) ‘현재 재배작물 수확 직전~직후’까지 또는 ‘다음 작물 재배 직전’에 실시한다.
 - (다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에서 ‘수확 직전~직후’는 ‘열매 수확 직전~직후’, ‘재배 직전’은 ‘퇴비 살포 전’으로 적용한다.

아.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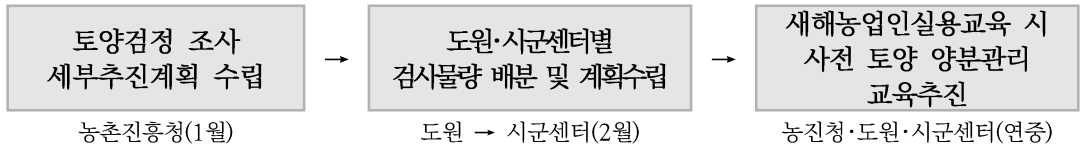
-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으로 감액 대상인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처분에 대하여 7일 이내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지급제한과 관련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기관은 처분의 내용을 적용한다.
 - 농업인 등이 토양검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도 기술원, 시군기술센터에서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토양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농업인이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료 구매 영수증 또는 영농기록일지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민원처리 결과보고 공문 등 제외근거 기록물 보존 필요)

자.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10.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 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5년 점검 결과 적용기간 : '24.9.1.~'25.8.31(시료수거일 기준)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필지 수, 조사결과 필지 수, 부적합 필지 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장은 매년 1.20일까지 이행점검 「전년도 결과 및 금년도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시료채취 기간에 따라 아래의 기한에 이행점검 결과를 휴토람·Agrix에 입력·전송해야 한다.
 - 결과입력 전송 기한
 - * 시료채취 기간(1.1. ~ 8.31.) 이행점검 결과 입력·전송 기한 : 10.10.
 - * 시료채취 기간(9.1. ~ 12.31.) 이행점검 결과 입력·전송 기한 : 1.20.
 - * 전산 오류 발생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즉시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2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가. 토양검정 계획 수립 및 교육



[농촌진흥청, 1월]

- 농촌진흥청은 기본직접지불금 관련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30일까지 시·도에 통보한다.
 - 지역별 논·밭·과수원·시설 재배지의 면적, 주요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 검사물량을 배정한다. 이 경우 각 도농업기술원의 검사 여건, 지역의 특성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화학비료의 적정사용, 보관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농업인 대상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작목반 교육 등
 - 농촌진흥청은 비료의 적정사용 기술을 지도·보급하기 위하여 작목담당자·토양검정 담당자 등에 대한 양분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교관을 양성할 수 있다.
 - 아울러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업하여 비료사용처방서를 토대로 비료의 적정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2월]

- 시·도는 관할 지역 특성에 맞게 시·군·구 검사물량 배정계획, 농업인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토양검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에 2.26일까지 제출한다.
 - * 점검 계획 적용기간 : 1.1일 부터 12.31일 까지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으로 주요 작목에 대하여 토양검증대상 필지를 무작위 선정하되, 최근 3년 이내 중복조사는 피한다.
 - 이행점검 계획은 조사대상 필지 수(계획)와 2차 토양검정 대상 농가 및 3차 적합 이후 3년이 경과한 농가의 토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선정된 필지가 형질의 변경, 타용도 사용 등 토양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필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토양검정 대상은 전년도 공익직불등록 경영체를 참고하여 선정 및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기본직불금 신청이 완료된 후 금년도 직불 등록 제외된 필지는 이행점검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다.(제외된 필지만큼 추가 이행점검 실시한다.)
- 기존의 경영체에 대해서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경영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경영체에 대해서 1차 이행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농업인이 희망하여 토양검정을 요구할 경우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적정하게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이행점검(상시)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에 관한 분석기술 관리를 위하여 토양검정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지자체는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료 수거 7일전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입회요청서(양식별도)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한다.
 - 다만, 정해진 일자에 조사대상자 미입회 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할 수 있다.
 - 입회요청서는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필지에 대해 실시하는 2차 토양검정 필지부터 적용할 수 있다.
- 대상자 선정 후 이행점검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지자체 장의 토양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이때, 검사 결과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 토양검정 결과는 ‘휴토람’에 입력하도록 하고,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인 경우 이행점검 기관의 장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처분에 대하여 10일 이내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 농업인은 14일 이내 소명자료(비료구매영수증, 영농기록일지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회 추가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다.
-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검정담당·재배작목담당·농업인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집합교육 또는 개별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집합교육 및 개별교육 추진 시 등록부 등을 활용하여 교육 수료 결과를 관리한다.